

위임장

※ 하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열람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위임자	상호(한글)	대교관세사무소	사업자등록번호	111-22-33333
	대표자 성명	최홍석	생년월일	0000.00.00
	전화번호	032-719-2196	휴대전화번호	010-0000-0000
② 위임 사항	가.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신청	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	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	
	나. 전자상거래업자 갱신 신청	[<input type="checkbox"/>]	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, 제38조 및	
	다. 전자상거래업자 변동 신고	[<input type="checkbox"/>]	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	
	라. 협력인정업체 등록 신청	[<input type="checkbox"/>]	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담당	
	마. 협력인정업체 정지해제 신청	[<input type="checkbox"/>]	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	
			동의합니다. 신청인 최홍석 (서명 또는 인)	

아래의 수입자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2026년 06월 00일

위임자 **대교관세사무소** **최홍석**

○○세관장 귀하

[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

③ 수입자	상호(한글)	대교관세사무소	사업자등록번호	118-04-74913
	대표자 성명	최홍석	생년월일	
	전화번호	032-719-2196	휴대전화번호	

- ①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②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1조의2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·대여가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.

위임장 작성방법

- ① 위임자 : 위임을 하고자 하는 업체(개인)의 상호(한글)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의 내역을 기재한다.
- ② 위임사항 :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체크한다.
- ③ 수입자 : 위임을 받은 업체(개인)의 상호,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.